

연구보고서 2011-2

#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해소방안

2011. 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Policy

*연구진*

---

이종광 연구위원

김혜원 책임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 간 사

최근 10년 사이 대형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일상화 되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대형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도, 자금난에 시달려도, 부실이 누적되어 파산해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점도 있고 정책당국이 관심을 더 기울여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바꾸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종광 연구위원과 김혜원 책임연구원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성심껏 자문에 응해주신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 국토연구원 김성일 센터장, 법무법인 태평양 정규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신길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황석연 상무, 황조건설 이태석 대표이사, 남양건설 유현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문중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 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노재화



## 요 약

- 정부와 금융권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화된 건설업체의 회생을 도모하고 또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함. 본 연구는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설문조사는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694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93개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전문가 면담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정책전문가 2명, 종합건설업체 임원 1명, 전문건설업체 임원 각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음

○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의 부실

- 원도급업체의 재무 및 신용상태,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실함. 정보수집 기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임
- 정보수집 방법도 동업자의 전언에 의존하는 등 주먹구구식이 많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되지 않고 있음
-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사전 대처는 어렵고 사후대처가 일반적이며 그마저도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고 있음

○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감액으로 인한 자금난

-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함. 원도급업체도 유동성 부족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구조조정을 전후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을 요구하기도 함
- 어음지급이 늘어나지만 이미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동화가 어렵고 장기보유하면 부실채권이 됨
- 심한 경우 더 저가에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음

○ 신용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의 어려움

- 원도급업체의 금융권 신용이 하락하면 그 원도급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연쇄적으로 하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게 됨. 금융기관은 하도급업체를 독립적인 신용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보다 원도급업체의 신용과 연관시

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도급업체의 부도는 하도급업체의 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조차 회수하려 함. 하도급업체로서는 하도급대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어음도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운영자금과 공사자금 공급조차 막히면 신규자금을 공급받을 수단이 없음

○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상환

- 원도급업체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원도급업체의 신용을 매개로 원도급업체가 대출을 상환할 것을 예정하여 이루어짐. 금융기관은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되지만 원도급업체는 부도 처리되지 않고 연체된 것으로만 처리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직불 비협조

-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잘 협조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불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원도급업체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에 앞서 원도급업체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 앞으로의 하도급공사 수주도 고려해야 하는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했는데 원도급업체의 승낙까지 받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음.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직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직불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이행에 소극적인 보증기관의 행태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는데,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는 경우에도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함
-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하도급업체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고 있음

□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구조조정 대응 역량 제고, 자금조달능력을 확대 등 두 가지는 기업경영 측면의 방안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보



증 실효성 제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등 3가지는 제도적 측면의 방안에 해당함

○ 하도급업체의 대응역량 강화

- 정보수집 기능 활성화 :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하도급업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기업의 정보수집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함.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두어야 함. 하도급업체 대표들의 회합에서 인지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진위를 확인하며 활용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고 해도 무의미함. 초보적인 단계라 하더라도 정보수집과 관리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업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임. 하도급업체는 기업의 영세성이라는 현실만 탓하지 말고 최소한의 정보기능이라도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그 수준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음
-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기업의 조직역량 강화: 중소기업 일수록 최고경영자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은 더 중요함.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인 기업을 구할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 오히려 기업을 절대 헤쳐 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음. 조직역량 강화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중소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믿고 쓸 만한 능력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것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더욱 우수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원들이 조직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함. 최고경영자의 능력과 조직역량은 밀

접한 관계가 있음.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을 잘 회피하거나 좋은 성과를 낸 하도급업체는 우수한 경영자와 조직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함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음

- 하도급업체 간의 공동대응 : 구조조정 원도급업체는 다수의 현장에서 수많은 하도급업체와 일하고 있음. 하도급업체가 단독으로 원도급업체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 법원, 제3의 채권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함. 하도급업체들은 공동대응의 성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과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하도급업체의 대표는 공동대응을 적극적으로 권장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방향 결정, 전문가 고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함

#### ○ 자금조달능력 확대

- 자금조달 계획 수립과 집행·금융기관 접근성 확대 :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고 스스로의 신용을 구축해야 함.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기관과의 독립적인 거래관계와 신용체계를 구축해야 함. 원도급업체의 신용에 의존하여 하도급공사를 담보로 하는 금융거래는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음.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대형은행보다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지역기반의 중소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함. 담보로 사용

할 수 있는 자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비상시에 활용할 자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현금수령 원칙 고수 :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현금수령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의 어음은 시한폭탄과 같음.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청산이 결정되면 어음은 부실채권으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산 후 권리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임. 급한 마음에 어음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있으려면 사전에 계획적인 자금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용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보완 및 활성화

- 구조조정 개시 신청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추가 :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나 다름없음. 따라서 구조조정 개시 신청한 경우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의무 이행 강제 :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한 의무가 지켜지도록 해야 함. 하도급업체들이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비협조를 미리 겁내서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상황임. 서울시는 계약부서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 직불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고 가능하면 하도급공사는 직불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정부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도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발주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실효성 제고

-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 보증기관은 보증의무 이행에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보증사고가 많을수록 경영수지는 악화되기 때문임.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이행에 있어서 필요이상으로 조사기간을 늘리거나 보상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이러한 보수적 태도가 반영된 것임. 그러나 보증기관이 보증의무를 해태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증기능이 훼손되고 신뢰를 상실하여 건설 산업의 중요한 기본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보증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증의무 이행에 나서도록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구조조정 개시 신청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행 사유에 포함 :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나 워커아웃 등의 구조조정 개시 신청한 경우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사유에 포함하여야 함. 현재는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만을 지급보증의 사유로 두고 있으나, 심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급불능에 준하는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강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상향하여 범위를 축소해야 함. 하도급업체들은 아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하도급

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A 등급업체 중에서도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AA등급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 하도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폐지해야 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엄밀히 말하면 하도급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하도급업체에게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신뢰하는 것은 원도급업체의 상환능력임
- 금융기관은 원도급업체가 혹시라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청구권 즉 일종의 연대보증의무를 지우고 있음.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을 요청하는데 원도급업체는 당좌거래정지와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고 단지 연체로 처리될 뿐이어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상환청구권을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동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임. 금융당국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청구권을 부가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2장 건설산업 구조조정 현황 .....	11
제3장 기업 구조조정 제도 .....	19
1. 기업 구조조정의 의의 .....	19
2. 법정관리 .....	23
3. 워크아웃 .....	32
제4장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	43
1.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 부실 .....	43
2. 하도급금액 감소 또는 미지급으로 인한 자금난 .....	47
3. 신용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의 어려움 .....	53
4.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상환 .....	54
5. 하도급대금 직불과정에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비협조 .....	56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이행에 소극적인 보증기관의 행태 .....	59
제5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	61
1. 하도급업체의 대응역량 제고 .....	61
2. 자금조달능력 확대 .....	67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	70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효성 제고 .....	74
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	80
<b>제6장 결론</b> .....	<b>85</b>
<b>참고문헌</b> .....	<b>95</b>



## - 표 목 차 -

<표 2-1> 최근 3년간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 .....	13
<표 2-2> 100대 건설업체 중 구조조정 업체 .....	14
<표 2-3> 주요 건설업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 .....	15
<표 2-4> 부채비율 200% 이상 건설업체 .....	16
<표 3-1> 2011년도 주채무계열 선정 현황 .....	37
<표 4-1> 구조조정 법제에 대한 지식 .....	44
<표 4-2> 구조조정 인지 시점 .....	45
<표 4-3> 구조조정 정보 수집 및 관리 유형 .....	46
<표 4-4> 구조조정 정보 취득 수단 .....	47
<표 4-5>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및 태도 .....	48
<표 4-6> 구조조정 전후의 하도급대금 지급 패턴 .....	49
<표 4-7> 하도급금액 감액 여부 .....	49
<표 4-8> 하도급금액 감액 비율 .....	50
<표 4-9>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수령 행태 .....	51
<표 4-10> 하도급계약 중도해지 경험 .....	52
<표 4-11> 하도급계약 중도해지 사유 .....	52
<표 4-12> 하도급업체 금융거래 어려움 여부 .....	53
<표 4-13> 금융기관이 취하는 불리한 조치 .....	53
<표 4-14>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 여부 .....	54
<표 4-1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 주체 .....	55
<표 4-16> 하도급업체 상환청구권 유보 여부 .....	55
<표 4-1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여부 .....	56
<표 4-18>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	57
<표 4-19> 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행태 .....	57

<표 4-20> 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대한 발주자의 행태 .....	58
<표 4-2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건으로 원도급업체 동의 요하는지 여부 .....	58
<표 4-22> 보증기관의 보증의무 이행 행태 .....	59
<표 5-1> 구조조정 대응방식에 따른 성과격차 .....	63
<표 5-2> 원도급업체 구조조정 관련 독점정보의 공유의향 .....	65
<표 5-3> 원도급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대응 여부 .....	66
<표 5-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업체 .....	78
<표 5-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필요성 인식 .....	82

기업의 생명은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경쟁력 없거나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다. 생산요소와 시장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기업실패의 원인이 존재하는 수준은 다양하다. 실패원인이 기업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산업에 있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쇼크나 정치사회적 변화 때문에 기업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대공황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10만개가 넘는 기업이 파산했으며,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300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1933년에 전체 노동력의 25%에 해당하는 1300만 명으로 늘었다(강철구, 2011).

산업화 이후 성장일변도의 상승국면에만 익숙해 있던 한국도 1997년 발생한 외환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쟁력이 없거나 한계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기업이 무수히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꿈에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은행과 대기업집단이 한 순간에 파산하여 이름이 사라지고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생소한 것이었다. 10년 만에 닥친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예상하지 못한 쇼크였다. 세계경제가 한 묶음으로 엮여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부실채권의 여파에 한국경제까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신속하고 공격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연착륙한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3년여가 지나면서 거시경제 전반의 측면에서는 당초의 쇼크에서 많이 벗어났다. 2010년도 상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200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 달러대를 회복했고, 경제성

장률도 6.2%로 호조를 보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다시 2만 달러대로 진입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해 보다는 45억8천만 달러 감소했지만 282억1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14.8%, 서비스업은 3.5% 성장하여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성장률이 0.1%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건설업은 아직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2008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시공능력평가 400위권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국내 건설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보아 건설시장의 성장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00위권에 속하는 종합건설업체 중 29개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대표적 건설업체에 해당하는 100대 건설업체의 30%를 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이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고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정관리든 워크아웃이든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기업은 많은 중소기업 또는 하도급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보다 먼저 협력업체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원도급 건설업체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개의 하도급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전문건설협회의 내부자료(2010)에 따르면 원도급업체 1개사가 부도 등으로 무너지면 하도급업체는 평균 202개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들 하도급업체는 1230억 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또 100대 건설업체 중 구조조정 중인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는 4469개사이며 하도급대금 채권은 모

두 10조 216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M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마자 그 여파로 하도급업체 5개 업체가 부도를 냈고 65개 하도급업체가 346억 원의 피해를 본 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이다.(서울경제신문, 2010.6.4)

부실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구조적 문제점으로 있다는 지적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인 인식은 1997-98년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수년 전부터 한보 등 대기업의 부실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당시에는 부실기업 정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부실이 누적되었다.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부실화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금리는 급격히 상승하고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자 사실상 금융지원에 의존해서 연명하던 기업은 물론이고 경영상태가 양호했던 기업까지 유동성 부족으로 재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채무이행 불능에 빠지고 금융기관도 파산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외환위기가 부실기업 정리와 회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이다(구정숙: 3-4).

구조조정에 관한 문헌의 유형은 기본적인 자료 제공, 구조조정의 성공변수 추출, 구조조정 제도의 효과 분석, 구조조정 세제,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환위기 초기의 문헌(유세종, 1997; 윤영신, 1998; 은행감독원, 1998; 이정호, 1999; 이성규, 2000)은 대체로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구조조정 수단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

했다. 당시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철·이기환·박주철(1999)은 법원이 진행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화의 기업 41개와 금융기관들이 진행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44개와 대상으로 주식시장의 반응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평균누적수익률 더 크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워크아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석진·김정우(2000)의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방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 기업 25개, 화의 기업 40개, 워크아웃 기업 44개를 대상으로 공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방식에 따른 성과에는 차이가 없어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양병용(2006)은 법원이 중심이 되는 법정관리와 화의, 민간기관에 의한 회생제도인 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가 유용한지를 기업회생 공시 전과 후의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연구하였다. 공시시점에서의 누적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채무유예 효과로 인해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나타나지만,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개선이 회생제도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정상기업의 경영성과와 비교한 결과 안정성은 개선되었지만 성장성·수익성·생산성·활동성은 더 악화되어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구조조정 수단이 더 우수하다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화의를 선택한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제도의 효과를 비교분석한 위의 연구와 달리 단일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강호정(2000)은 법정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기업의 성과는 산업평균보다 낮고 부채비율도 법정관리 신청 전보다 증가했다.

또 법정관리를 종료한 기업들 중 15%가 다시 부실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법정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동수·한상인(2001)은 워크아웃제도의 효과를 기업가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워크아웃 기업 62개를 분석하였는데 33%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성공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출자전환과 자산 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제시했다. 강동수·김준경·최용석(2004)은 후속연구에서 워크아웃의 성공요인으로 출자전환이 가장 중요한 기업구조조정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이외에 초기의 총 채권자 대비 10% 이상 채권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이 개선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반면 자구노력이나 고용조정 변수의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밝혔다.

대체로 구조조정 수단의 효과 및 성공변수에 대한 분석은 일관성이 없고 사례의 수가 적어 제도간의 우열이나 변수의 유효함을 확정적으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속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되자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아쉬운 감이 있다.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 그리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개선방안 중의 일부는 제도개선에 반영되는 등 나름 의의가 없지 않았다. 강동수·한상인(2001)은 워크아웃 기업에 구주주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남아 있는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2001)는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도산제도가 파산, 법정관리, 회의를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퇴출되지 않고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

화의개시 결정을 받으면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도 화의절차를 중지할 수 없으며, 법절차를 따지는 와중에 회생시기를 놓치거나 부실규모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에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청산형(파산법)과 재건형(화의·회사정리법)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재건형은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2)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는데, 기업회생과 관련된 부문 외에도 지주회사, M&A, 금융, 세제, 노동, 공정거래 등 8개 분야 25개 사항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고,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장주도의 기업퇴출시스템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그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사무펀드 조성, 부실채권 전문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법절차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자동중지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산 3법의 통합은 현실화되었다. 2004년 9월 23일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약에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에 합의했다. 통합도산법은 200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채권기관의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기업구조조정 전문기업과 펀드의 효율성 또는 우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의 유형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구조조정펀드(CRF), 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있다. 이들 구조조정 기구는 종류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업무수행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조정, 매입과 매각 대상이나 도입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 CRC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기업 인수,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 매각



을 목적으로 한다. CRF는 중소, 중견기업의 유가증권투자를 위한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금융수단으로 구조조정기금이라 불린다. CRV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등을 전문적 노하우로 채권은행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제(2004)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CRC가 부실채권 인수에 용이하고 조합결성 활성화에 유리하므로 M&A과정에서 CRC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김병삼(2006)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CRV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CRC나 CRF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상충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도 신속한 구조조정 지연으로 원활한 회생작업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카드, 대우캐피탈, 신우 등 3개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통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회생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2006년 10월 22일로 폐지된 CRV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외환위기 초기에는 자료제공 목적의 문헌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름면서 점차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수단의 효과에 대한 분석, CRC·CRF·CRV 등 구조조정기구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연구로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는 했으나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탈출이 예상외로 빨랐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구조조정 수단의 효율성 주제에 편중되어 있다. 기업을 빨리 정상화시켜 금융기관이 채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회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이러한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건설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점에서 건설업체의 구조조정 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에서는 협력업체가 단순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경영과 시설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하도급업체는 노임 등 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구조조정이 시작된 원도급업체는 채무가 동결되어 하도급업체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각 지역에서 수위를 다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영위기를 맞은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이 크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건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겪게 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배경과 제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전체 경제시스템 또는 활동주체들에게 다른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하도급업체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건설업체 구조조정의 범위는 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워크아웃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체계는 먼저 구조조정 제도의 내용을 고찰하고, 하도

급업체들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하도급업체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저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저개발 국가들은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수치로 증명된다.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조143억 달러로 200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 달러대에 복귀했다(2007년: 10,493억 달러, 2008년: 9,309억 달러, 2009년 8,344억 달러, 2010년 10,493억 달러). 경제성장률 추세도 2009년 저점을 지나 회복세가 완연하다(2002년: 7.2%,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 더블 딥(double deep)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2011년도 경제성장률은 4%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당초 5%를 예상했으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4.5%), KDI(4.2%), 삼성경제연구소(4.3%), 현대경제연구소(4.3%), IMF(4.5%), OECD(4.6%) 등 대부분의 경제관측기관이 4%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치는 KDI(2011)가 추산한 2011년 기준 잠재성장률 4.3%에 근접하는 것으로, 2.86%까지 낮아진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한국개발연구원, 2011).<sup>1)</sup>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대 중반이었었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 등의 요인으로 4.3%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2008이후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이 비하면 하락세가 크지 않다는 평가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과 2009년에는 1만 달러대로 떨어졌는데, 2010년 2만759만 달러를 기록하여 다시 2만 달러대로 진입했다(2007년: 21,659달러, 2008년: 19,296달러, 2009년: 17,193달러, 2010년 20,759달러). 2010년도 경상수지는 282억1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2007년: 217억7000만 달러, 2008년: 185억7000만 달러, 2009년: 327억9000만 달러). 지난 해 보다는 45억8천만 달러 감소했지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8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 승용차 등의 수출호조이다. 수출 4674억 달러, 수입 42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규모와 무역수지 규모 모두 우리나라 역대 최고기록으로, 수출액은 세계 순위로 7위이다(1위 유럽연합, 2위 중국, 3위 독일, 4위 미국, 5위 일본, 6위 프랑스, 7위 한국, 8위 이태리, 9위 네덜란드, 10위 캐나다). 2011년도에는 무역규모가 최초로 1조 달러(수출 5130억 달러, 수입 48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2)</sup>

---

잠재성장률이 6%대 중반에서 4%대 중반으로 크게 하락한 바 있다. KDI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금융시스템에 직접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KDI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높이는 것 보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경제성장률을 하여 경기부양 정책을 쓰다보면 물가안정과 재정악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번 KDI의 권고는 올해 5% 성장을 내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KDI는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이일보, 2011.5.2일자 B2면, KDI 잠재성장률 높이는 정책 권고)

2)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문제이다. 2010년의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에서 무역규모가 차지하는 비율)는 87.9%로 2008년의 92.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무역의존도는 1990년 초반 40%대에 머물렀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50.8%를 넘어서고, 1998년 63.0%, 2000년 들어 60-60%대를 맴돌다가 2007년 69.4%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은 2008년 92.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와 OECD 등의 작성한 「G20 주요 경제지표(PGI)」에 따르면

그런데 건설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0년의 경우 건설업은 마이너스 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4.8%, 3.5%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2008년 120조851억원, 2009년 118조7142억원, 2010년 103조2298억원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1> 참고).

<표 2-1> 최근 3년간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

구분	2008	2009	2010
공공공사	41조8488억	58조4875억	38조2368억
민간공사	78조2363억	60조2267억	64조9930억
합계	120조0851억	118조7142억	103조2298억

2011년 11월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23개 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와 같은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경남기업(2009.1.30-2011.5.30), 이수건설(2009.3.30-2011.6.27)이 워크아웃을 그리고 현진(2009.10.15-2011.11.30)이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삼부토건이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승인받음에 따라 그나마 상황이 호전된 것이다.<sup>3)</sup>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G20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5위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82.2%), 독일(61.6%), 멕시코(54.3%), 캐나다(48.7%), 남아프리카공화국(47.1%).

3) 경남기업은 지난 5월 30일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한 채권 금융기관 동의 비율 75%를 충족하여 당초 예정된 2012년 6월보다 1년 빨리 워크아웃을 종결했다. 이수건설의 워크아웃은 6월 27일 종결되었다. 워크아웃이 시작된 2009년 1월, 이수건설의 부채비율은 3255%(2008년말 기준)에 이르렀으나 113%로 대폭 개선되었다. 이로서 경남기업과 이수건설은 2009년 1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 중 신일건설에 이어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마친 사례가 되었다. 현진은 법원이 회생계획안

<표 2-2> 100대 건설업체 중 구조조정 업체

시공능력 순위	회사명	유형	개시일자	비고
13	금호산업	워크아웃	2010.01.06	
26	벽산건설	워크아웃	2010.07.05	
30	풍림산업	워크아웃	2009.01.29	
34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2010.10.25	
36	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2011.07.12	
38	고려개발	워크아웃	2011.11.30 신청	
39	남광토건	워크아웃	2010.10.28	
40	임광토건	법정관리	2011.11.24	
41	진흥기업	워크아웃	2011.02.24	
43	남양건설	법정관리	2010.12.27	
46	삼호	워크아웃	2009.01.29	
48	한일건설	워크아웃	2010.07.05	
53	LIG건설	법정관리	2011.04.01	
57	우림건설	워크아웃	2009.01.29	
58	범양건설	법정관리	2011.10.20 신청	
59	금광기업	워크아웃	2010.12.15	
66	대우자동차판매	워크아웃	2010.04.14	
68	동일토건	워크아웃	2011.01.06	
70	중앙건설	워크아웃	2010.09.24	
82	월드건설	워크아웃 법정관리	2009.01.23 2011.03.17	
85	동문건설	워크아웃	2009.01.29	
95	성우종합건설	워크아웃	2010.06.07	
100	성원건설	법정관리	2010.04.15	

자료: 경실련, 대한건설협회 자료 참조

문제는 건설경기의 위축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불안요소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PF 지급보증은 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표 2-3>은

에 따른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삼부토건은 올 4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채권단과 신규자금 지원 합의를 이끌어내 6월 26일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승인받았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시공능력순위 20위까지의 건설업체들의 PF 대출 잔액을 나타낸 것이다. PF 대출 규모는 대우건설의 경우 3조원을 넘어섰고, 1조원을 초과하는 건설업체는 14개나 된다. 금호산업, 남광토건, 삼호, 진흥기업,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PF 보증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표 2-3> 주요 건설업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

시공 능력 순위	회사명	PF 대출잔액	시공 능력 순위	기업명	PF 대출잔액
1	현대건설	1조7561억2200만원	11	한화건설	2조1313억6900만원
2	삼성물산	1조2942억4000만원	12	금호산업	2조1253억3500만원
3	GS건설	2조5138억2200만원	13	두산중공업	2조1414억1800만원
4	대우건설	3조8506억5600만원	14	한진중공업	2251억9500만원
5	대림산업	1조9864억1100만원	15	쌍용건설	1조1867억4200만원
6	포스코건설	1조3669억3704만원	16	동부건설	5940억원
7	롯데건설	2조3099억6800만원	17	경남기업	7356억3400만원
8	현대산업개발	5891억1000만원	18	한라건설	1조4631억1700만원
9	SK건설	2조5615억7990만원	19	현대엠코	4246억9200만원
10	두산건설	1조4546억6500만원	20	코오롱건설	4101억9400만원

자료: 금융감독원(동아일보 2011.4.18)

2010년 말 기준으로 100대 건설업체들의 PF 지급보증 규모는 64조 754억원에 이르고 있다. 100대 기업의 자기자본총액 62조3711억인데 비해 부채총액은 106조2967억으로 평균부채비율은 170%이다. 47개 업체는 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보다 더 많다. 여기에는 10대 건설업체도 4개나 포함되어 있다. PF 지급보증은 건설업체의 부채로 잡히는 않지만 대출받은 시행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면 보증을 선 건설업체가 대신 상환해야 하는 사실의 부채에 해당한다. 2010년도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 190%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PF 지급보증을 포함한 조정부

채비율로 보면 202%로 평균보다 높아진다. 100대 건설업체 중 조정부 채비율이 400% 이상인 건설업체만 해도 14개나 된다. 10대 건설업체도 지급보증을 부채에 포함하면 부채비율은 237%로 올라간다. 100대 건설업체 중 평균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기업은 37개이다(<표 2-4> 참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현진, 성원건설, 한솔건설 등을 포함하면 40개에 이른다. 건설업계 전체로 2011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규모는 약 25조원(상반기 13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 만기연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선일보 2011.4.27, 아주경제 2011.6.6)

<표 2-4> 부채비율 200% 이상 건설업체

업체명	부채비율(%)	업체명	부채비율
SK건설	290.8	한일건설	1927.2
두산건설	293.9	진흥기업	345.5
금호산업	933.1	삼호	523.2
한진중공업	211.3	LIG건설	288.1
쌍용건설	287.4	대우자동차판매	1956.7
동부건설	241.1	우림건설	107.2
경남기업	251.3	울트라건설	496.2
코오롱건설	397.8	중앙건설	594.5
벽산건설	1211.5	신성건설	580.0
풍림산업	485.9	동문건설	218.6
한신공영	236.6	월드건설	1576.5
신동아건설	975.2	서브원	325.3
남양건설	212.5	신도종합건설	721.6
삼부토건	202.7	성우종합건설	467.8
동양건설산업	340.2	CJ건설	405.0
남광토건	1010.7	동원시스템즈	235.4
STX건설	288.8	대성산업	210.2
고려개발	212.4	이테크건설	218.4
서희건설	264.8		

자료: 금융감독원(조선일보, 2011.4.27)

건설공제조합이 7,96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등 신용상태를 평가한 2011년도 건설사 정기신용평가 결과 A등급 이상(A-AAA)의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가 지난해 2.6%에서 올해 2.5%로 0.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사업 비중이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악화, 부채비율 증가, 매출·영업이익 감소에 시달리다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A등급 이상 업체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코스카저널 2011. 9. 5).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6%로 3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월별 어음전국부도율 동향). 이는 2010년 4월 어음부도율이 0.0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구조 조정된 건설업체들, 특히 지방 건설업체들이 발행한 어음의 잇단 부도로 어음부도율이 높아진 것이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성 악화로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세계경제는 회복 국면에서 유럽의 재정위기로 다시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상황의 전개 여부에 따라 아직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건설산업에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저축은행부터 시작하여 금융권 부실정리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불어 닥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각 주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 1. 기업 구조조정의 의의

기업의 생명은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경쟁력 없거나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기업들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어떤 기업은 시장에서 실패한다. 기업의 실패 원인은 기업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산업에 있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쇼크나 정치사회적 변화 때문에 기업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대공황기간 동안 10만개가 넘는 기업이 파산했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기업이 한계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9년에는 상장업체 89개사,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 있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상장업체 83개사와 90개사가 퇴출되었다(한국거래소 자료). 지난 1955년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CJ제일제당, LG화학, 현대해상(동방해상보험), 한진중공업(대한조선공사), 대림산업, 한화, 한국전력 등 7개 뿐이며, 1964년 10대 그룹(삼성, 삼호, 삼양, 개풍, 동아, 락희, 대한, 동양, 화신, 한국유리)중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과 LG(락희) 정도에 불과하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기업이 경쟁에 실패하거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당연한 원리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치 않다. 개인과 가계의 경제활동에서 기업의 중요성이 오늘날처럼 큰 시기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0년도 말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 4080만 명의 63.8%에 해당하는 2603만 명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인구이다. 기업의 도산이나 퇴출은 해당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규모와 차원에 걸친 기업과 가치사슬(value chain)<sup>4)</sup>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은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다. 또 기업 운영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빌리면서 금융기관과 관계를 맺게 된다. 부실기업과 연결된 다른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부실화 되는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다수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은 기업 자체의 회생 못지않게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실상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었고, 그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편법적인 수단 정도로만 이해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바뀌어,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법제의 정비·확충이 기업지배구조개선 못지않은 초미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의 각 부문을 혁신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더 발전시키거나 위기에 처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채무 또는 자산 측면의 구조를 조정하는

---

4)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동업 회사들. 원재료의 수급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일련의 자원과 정보의 흐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부품, 기자재, 원료 등의 구매에서부터 조달, 제조, 보관 및 운송, 유통, 판매까지의 가치 사슬 전체를 담당하는 공급업체를 통칭한 것이다.(네이버 백과사전)

것으로 좁게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sup>5)</sup> 개념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은 만큼 기업구조 조정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은 최적의 자본구조를 위하여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본구성을 재편하는 재무구조조정, 핵심역량을 식별하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자원배분 구조의 변환, 기업분할 등을 통한 소유사업과 자산을 재구성하는 사업구조조정, 그리고 조직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조직구조조정 등이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산업구조조정이나 경제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sup>6)</sup> 구조조정은 통상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광의로는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정상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박기진외, 2007: 29-31, 124-130)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인식, 절차,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크게는 전통주의 시각과 절차주의 시각으로 나누어진

---

5) 기업구조조정을 넓게 보는 입장에 대하여는 「강신규외(2002), 경영학원론, 형설 출판사」와 「강효석외(2002), 기업구조조정론, 홍문사」를 참고할 것.

6) 산업구조조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구조조정은 산업 간의 산업구성비를 고도화하는 것과 더불어 특정 산업내의 수급불균형 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 정부가 주도한 산업합리화조치이다. 적자누적과 부채과다로 부실기업군이 증가하여 개별기업 정리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채권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마저 높아 지자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해 제3자 인수 등의 방식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한 것이다. 모두 57개의 부실기업이 정리되었다. 산업합리화조치는 부실기업을 금융과 세제지원을 통한 인수하게 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불렀고 결과적으로 재계의 판도가 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다른 사례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9년에 정부가 주도한 빅딜방식의 대기업 사업부문 구조조정이 있다. 반도체·정유·발전설비 등 7개 부문의 산업에서 이루어진 인수합병이 핵심으로, 재벌 간의 사업부문 교환 및 합병을 통하여 과잉생산능력을 조정함으로써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업결합은 그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능가하는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산업정책으로 시장경쟁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다.(박기진외, 2007: 41-42, 46-47, 51-53)

다. 전통주의적 시각은 기업의 부도나 파산을 특별한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 기업의 회생을 통해 실업을 줄이고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파산을 방지하며, 지역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회생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기업의 회생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이해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기업회생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져야 하며 구조조정 제도는 다른 경제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절차주의의 시각은 기업의 부도나 파산은 시장 기능에 따른 결과이므로 여타의 경제 제도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절차주의에서는 기업의 위험을 재무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재무적 위험 기업은 일시적인 재무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위기를 넘기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말하며, 경제적 위험 기업은 채무가 없더라도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재무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고 경제적 위험에 처한 기업은 회생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거나 법원이 필요 이상의 재량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동욱, 2001: 7-9)

시장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 부도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기능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의 효율성만 중시하여 빈번하게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도를 방지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도 재무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유예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전통주의적 시각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구조조정외 범주를 원칙적으로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구조의 개선하는 것으로 좁혀서 보기로 한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여기에 속한다. 기업회생(turnaround)이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잠재적인 어려움의 가능성에 직면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개선작업(workout)이란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재무구조나 사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개선작업은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합의하여 법률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우회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체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박기진외, 2007: 38-39)

## 2.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기업회생절차이다. 기업이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해서 부도위기에 처하거나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또는 청산을 결정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통합도산법 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 등 이른바 도산 3법을 통해 지급불능에 빠진 기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집단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각 법률마다 규율대상과 절차가 달라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도산 3법을 통합하여 통합도산법을 제정하여(2005.3.2) 시행하고(2006.4.1) 있다.

## 1)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

통합도산법은 기존관리인유지제도 즉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DIP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종전의 회사관리법에서는 법정관리인으로 변호사와 같은 제3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영의 단절로 인해 나타나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 경영권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더 많은 부실기업이 더 빨리 회생절차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것이 DIP 제도를 도입한 취지이다(유해용, 2010: 32-71).<sup>7)</sup>

통합도산법은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할 때 채무자의 재정 파탄의 원인이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부실경영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통합도산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통합도산법 시행 4년 동안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된 기업회생 사건은 35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기업회생 사건 180건 중 관리인이 선정되지 않은 10건을 제외한 170건 중 85%에 해

---

7) 구조조정 초기에 부실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화의를 선호했다. 그런데 화의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대기업에는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아니다.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기에 퇴출절차를 밟거나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부실규모를 키워 회생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도산법은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이 조기에 퇴출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영상의 큰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에게 조기 진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최승노, 통합도산법과 구조조정, 내외경제, 2002.11.5)

당하는 145건에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25건으로 15%로 나타났다(로앤비, 2010.4.1).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도록 하였다(통합도산법 제74조제4항). DIP제도는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기업경영자 입장에서는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가 더 매력적이다. 부실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채권을 동결해주고 특정한 경우 기존의 부채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정관리가 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DIP제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을 강조하다보니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이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건설업체와 조선업체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들과의 협의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 2) 채무자의 재산보전

통합도산법의 또 다른 특징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회생의 기반이 될 자산이 소진되어 회생절차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채무자의 자산이 불확정적인 경우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불가능하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후자로 갈수록 재산보전의 강도가 세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절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43조제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43조제2항).

다음으로 중지명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 포함), 소송절차, 행정절차, 조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44조제1항).

마지막으로 법원은 통합도산법 제44조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도 중지된다(통합도산법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 3) 기업회생 절차와 효력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하거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법원은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49조제1항).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42조). 또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285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주문과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고 관리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을 송달하여야 하며(통합도산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52조).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통합도산법 제49조 제3항). 회생계획의 수립, 인가 등에 관한 절 소개. 정리계획안 제출명령에 의해 정리계획안이 수립되는데 이 때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후 정리계획을 수행하면서 회사정리절차가 끝나게 된다.

관리인의 재산권 행사는 법원이 엄격히 통제한다. 법원은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재, 소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61조 제1항). 그리고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통합도산법 제61조 제2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통합도산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5항).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 및 제3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통합도산법

제64조제1항),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통합도산법 제65조제1항).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통합도산법 제66조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67조제1항).

채권의 권리 유형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알아본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자의 비용을 회생채권(제118조)이라 한다. 회생채권이 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회생담보권이라 한다(통합도산법 제141조). 회생채권을 가진 자를 회생채권자라 하고,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를 회생담보권자라 한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148조 및 제149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권리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147조). 법원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여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를 확정하고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을 확

정한다(통합도산법 제3절).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행위는 금지된다. 즉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합도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통합도산법 제131조). 한편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그리고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그렇지만 법원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거나 결정과정에서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통합도산법 제140조제1항). 또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제2항),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3항). 다만 공익채권<sup>8)</sup>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

8)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다음과 같다(통합도산법 제179조).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 4) 자동중지제도

최근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동중지제도가 대표적이다.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란 특별한 신청이 없더라도 도산절차의 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

#####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 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에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의 도산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도산절차개시의 신청 후에 채권자가 강제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추심이나 채무자의 변제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불필요한 채권추심이나 채무변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성용, 2090). 자동정지제도는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처럼 별도로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내지 않더라도 모든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정지되고 담보권을 가진 자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가진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조속한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발동을 통해 자동중지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률신문, 2011.11.16). 다만 자동중지제도입은 도산절차 전반을 관통하는 시각에서 도입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중지제도의 효율성은 자동중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개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제대로 발현되는데, 신청서제출에 의한 개시효과의 부여와 미국 파산법의 점유채무자제도의 도입 등 통합도산법의 전면적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복잡한 법률관계만 발생시켜 도산절차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박정호, 2010).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될 경우 채권자들의 원도급업체에 대한 채권추심이나 원도급업체의 채무변제를 방지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에 하도급업체들의 하도급채권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워크아웃

채무적 곤경에 처하였으나 경제적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단의 주관으로 기업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채무조건 등을 완화하고 조정함으로써 기업구조 개선방안(workout plan)을 마련하여 대상기업의 회생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of 주요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채권 금융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적 화의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완전 부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율협약에 따라 기업회생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생가능성도 낮은 법정관리 등의 법적절차에 의한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문제기업의 부도를 유예시키는 절차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데는 손실최소화, 손실분담, 공정성, 신속성 4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김동욱 외, 2001: 27-28). 손실최소화의 원칙은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손실의 크기를 가능한 한 줄이자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기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이어야 하며, 도산에 직면한 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하여 부도를 유예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손실분담의 원칙은 채권 금융기관만 일방적으로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 개선될 경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주, 경영진, 종업원, 노동조합도 손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채권자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부담, 의결권 부여 등에 있어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성의 원칙은 대상기업의 부실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합의와 기업개선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은 초기에는 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조정협약과 같이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나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입법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재무구조개선약정도 워크아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워크아웃 제도의 변화 과정을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조정협약, 재무구조개선약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부도유예협약

부도유예협약은 부실기업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35개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협약이다. 원래 명칭은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다. 초기에는 부도방지협력으로 불렸으나 부도유예협약으로 변경되었다. 1997년 한보와 삼미의 부도 이후 특정기업에 불리한 루머가 돌면서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출금을 회수하자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도유예협약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1997년 4월 21일 금융기관들이 만든 협약이다.

부도유예협약의 대상기업은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한 은행여신이 2500억 원 이상 되는 대기업이다. 자금난 때문에 부도위기를 맞은 대기업에게 2개월 정도 시간여유를 주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주거래은행이 협약적용을 위해 채권단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도 부도 처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적용대상 기업은 2개월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므로 회

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35개 은행권 금융기관들은 1997년 9월 1일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재산처분권 위임장이나 경영권포기각서, 임금과 인원 감축에 관한 노조의 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도유예협약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박기진외, 2007: 48-49). 즉 부도유예협약을 통해 대기업이 무더기로 부도 처리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부도유예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2개월의 시간낭비없이 곧바로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았던 기업의 92%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법정관리나 회의신청으로 귀착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았다가 유예기간이 만료된 25개 기업 중 정상화된 곳은 단 2개의 기업<sup>9)</sup>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23개 기업 중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대농, 대농중공업 등 7개사는 법정관리, 나머지 16개사는 회의신청을 했다. 2개월간의 부도유예를 거쳐 기업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부도유예협약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부도유예협약은 IMF가 투명성이 부족한 제도라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자 1997년 12월에 폐지하였다.

## 2) 기업구조조정협약

1998년 상반기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기업의 회생

---

9) 대농그룹의 미도파, 기아그룹의 삼안건설기술공사.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6월24일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발족하여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인지 아니면 퇴출대상 기업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의로 결정한다. 채권액 기준으로 75%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세 차례의 협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회생 혹은 퇴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이 기업에 대해 1개월(자산실사 시 3개월)간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부도 유예기간은 1회에 한해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채권행사 유예 대상 기업이 진성어음을 막지 못하면 당좌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자금통과 관련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면 당좌거래정지 처분은 유예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조정 시작 후 1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액의 30% 또는 위반금액의 50%내에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이버 지식사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 항목). 1998년 7월부터 총 104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이 중 25개 기업은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워크아웃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83개 기업은 워크아웃을 진행경과에 따라 졸업, 자율추진, 중단, 계속추진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는데 2004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조기졸업은 44개, 자율추진은 14개, 중단은 18개 계속추진은 7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 3) 재무구조개선약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을 정하고 이들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과 같은 채권단 등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의미한다. 주채무계열이란 금융권 전체 대출 중 0.1% 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을 의미한다. 2011년의 경우 약정대상 기준 부채규모는 1조3962억원이며, 약정대상 대기업계열은 37곳이다(<표 3-1> 참고). 2009년에는 45곳, 2010년에는 41곳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부채도 많아져 기업집단 순위를 보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하지만 적정수준 이상으로 부채가 늘어 순위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들 그룹의 재무상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즉 비주력 계열사 매각, 부실계열사 정리, 부채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못할 시에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준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사전에 부실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부실을 미리 털어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EBITDA 대비 현금성자산 대비 유동비율, 총차입금 대비 자기자본 등 6가지 지표를 평가하여 약정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채비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년 4월까지 재무상태 평가하고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2011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의 수는 금호아시아나, 한진, 동부, 대한전선, 성동조선, SPP조선 등 6개이다(머니투데이, 2011.5.23). 약정체결의 종료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때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정기 재무구조평가 결과 약정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야하며, 재무구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정체결을

종결하게 된다. 2011년의 경우 애경그룹과 유진그룹이 약정체결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표 3-1> 2011년도 주채무계열 선정 현황

순위	계열	채권은행	소속기업
1	현대자동차	외환	240
2	삼성	우리	421
3	SK	하나	272
4	현대중공업	외환	58
5	LG	우리	289
6	포스코	우리	196
7	두산	우리	140
8	한진	산업	87
9	금호아시아나	산업	96
10	GS	하나	144
11	STX	산업	135
12	한화	우리	123
13	롯데	신한	239
14	대우조선해양	산업	29
15	LS	우리	82
16	효성	우리	83
17	동국제강	산업	29
18	KT	국민	40
19	동부	산업	57
20	한진중공업	산업	19
21	대림	우리	25
22	CJ	우리	135
23	OCI	신한	47
24	대우건설	산업	27
25	하이닉스	외환	24
26	신세계	국민	23
27	대한전선	하나	34
28	성동조선	우리	7
29	코오롱	우리	56
30	S오일	신한	3
31	유진	농협	33
32	한국타이어	우리	35
33	웅진	신한	41
34	하이트진로	우리	23
35	세아	하나	42
36	한솔	우리	31
37	SPP	우리	11

자료: 금융감독원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연합뉴스, 2001.5.9). 특히 2010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과 투자를 위하여 재무개선약정 체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들어 재무개선약정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동안 순순히 약정을 체결해 온 다른 대기업그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 2011년 들어서는 한진그룹이 약정체결에 반발하면서 버티기 방식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이 현대그룹이나 한진그룹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시적인 차입금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세 차례에 걸쳐 입법되었다. 2001년 8월 14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5년 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법률의 형태로 입법되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8월 3일, 2010년 말까지 효력을 가진 제2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입법되었다.

워크아웃 추진절차는 대상기업이 선정되면 먼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된다. 협의회 통보 즉시 채권행사유예가 시작된다. 협의회를 통해 기업실사와 워크아웃플랜을 확정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채권총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워크아웃이 진행되는데 채권행사유예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부채조정과 자구계획, 지배주주 손실분담 방안 등을 포함한 5년 내외의 개선계획을 마련한 후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상 그리고 채권단 및 해당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한다. 만약 자율합의에 실패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다. 기업개선약정에는 대상기업이 이행해야 할 자구계획, 기타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경영권 박탈 또는 기업개선작업 중단한다는 제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개선약정 체결로 본격적인 기업개선 작업이 개시된다. 대상기업이 워크아웃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야 한다. 또 영업실적이나 자구계획 이행 실적 등이 채권단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잠재우고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단 보유지분을 능력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통상 금융기관은 기업개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고체계, 경영감시 모니터링 기능과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조정제, 2004: 11).

그런데 2011년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다시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자 국회는 2011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제3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3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3년 12월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3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서동우·정규상, 2011).

첫째, 3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신용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대상기업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상기업이 워크아웃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하면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종래에는 주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부

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관리 개시를 결의하면 워크아웃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이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부실징후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워크아웃이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든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워크아웃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종래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만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 중단에 대한 검토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3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상기업도 워크아웃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경우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이 어렵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이다. 그런데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중단 요청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통념상의 중단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조기졸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셋째 워크아웃 기업의 자금집행을 승인하는 자금관리인제도가 폐지되었다. 자금관리인제도가 폐지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기업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재조정을 해주고 신규자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워크아웃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자금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종전의 체계에 비하여 대상기업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의 자율성이 커지고 채권금

용기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효과는 제도의 운영과정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하도급업체 69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3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은 보완하였다. 전문가회의는 2011년 7월 13일 개최하였으며,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원도급업체 임원 1명,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 당한 경험을 가진 하도급업체 임원 1명, 하도급관계 전문가 2명 등 구조조정 및 하도급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하도급업체가 당면하는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애로사항의 항목은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 부실,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자금난, 신용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어려움,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상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과정에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의 비협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이행에 소극적인 보증기관의 행태 등 6가지이다.

### 1.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 부실

하도급업체들이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법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 15.5%이다.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이 67.8%로 응답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지식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에 응한 업체가 이미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을 경험한 업체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을 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구조조정 법제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구조조정 관련 법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미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을 경험했음에도 구조조정 법제에 관하여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도 16.7%나 되었다.

<표 4-1> 구조조정 법제에 대한 지식

항목	비율(%)
잘 안다	15.5
조금 안다	67.8
잘 모른다	15.5
전혀 모른다	1.2
합 계	100.0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사실을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되었는지,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원도급업체 구조조정 인지도시점에 관해서는 응답 업체의 62.5%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직전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1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알게 된 경우는 21.6%,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알게 된 경우는 2.3%이다. 구조조정 신청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비율도 13.6%나 되었다.

표 4-2. 구조조정 인지 시점

항목	비율(%)
구조조정 신청 직전	62.5
1-3개월 전	21.6
4-6개월 전	2.3
구조조정 신청 이후	13.6
합 계	100.0

원도급업체는 가능하면 구조조정을 피하려 한다.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도급업체들이 원도급업체로부터 구조조정 신청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직전 또는 직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76.1%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최소 1개월 이전에는 구조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사실을 숨기려하는 것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징후를 알 수 있는 원도급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정보 수집과 관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원도급업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하다. 적극적이지만 비체계적이라는 응답은 18.4%, 소극적이지만 체계적이라는 응답은 1.0%이다. 응답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77.5%는 원도급업체 관련 정보 수집 및 관리에 소극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을 인지하

는 시점이 이미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은 구조조정 직전과 직후에 많이 몰려있는 사실과 하도급업체들의 관련정보 파악 수준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도급업체의 상황에 관한 정보 파악에 소극적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하도급업체들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4-3> 구조조정 정보 수집 및 관리 유형

구분	적극	소극
체계적	3.1	1.0
비체계적	18.4	77.5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 수집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식적인 채널보다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도급업체가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전무(0.0%)하고, 원도급업체 임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8.6%로 나타나 원도급업체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회의에서는 구조조정 신청 직전에 사실을 통보해 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하도급업체 간의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정보를 얻는 경우가 39.2%로 동종기업간의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언론을 통해 원도급업체 구조조정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으로 40.1%였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의 정보수집에 대한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시점이라면 이미 구조조정이 임박한 시점으로 하도급업체가 자구조치를 취하기에는 늦은 때이다.



<표 4-4> 구조조정 정보 취득 수단

항목	비율(%)
원도급업체가 공식적으로 통보	0.0
원도급업체 임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정보제공	18.6
하도급업체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39.2
언론보도 등 외부정보를 통해	40.1
기타	2.1
합 계	100.0

## 2. 하도급금액 감소 또는 미지급으로 인한 자금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원도급업체는 자금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새로운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신용이 부족한 기업이 신규자금을 수혈받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협력의 수준을 넘어 불공정행위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예상했던 하도급대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1)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도급업체가 평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원도급업체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도급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문조사에서는 구조조정 개시 전후에 하도급대금이 잘 지급되었는지, 하도급대금 지급에

구조조정 개시 전후에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구조조정 개시 전의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에 관해 물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별로 없지만 마지못해 일부만 지급한다는 비율이 35.2%이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실제로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19.3%에 이른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대체로 하도급대금도 잘 지급되었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다.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를 합하면 94.3%로 구조조정 개시 전의 하도급대금 지급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표 4-5>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및 태도

항목	비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며 대체로 잘 지급한다.	5.7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급이 원활하지는 않다.	39.8
마지못해 일부 하도급대금만 지급한다.	35.2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실제 지급하지도 않는다.	19.3
합 계	100.00

구조조정 개시 후의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구조조정 개시 전과 비교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전과 후에 하도급대금이 계속 잘 지급되었다는 응답은 4.8%이다. 구조조정 전에는 잘 지급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 개시 후에는 잘 지급된다는 응답은 24.1%로 채권단이나 법원이 관리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원활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도급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우가 49.4%, 구조조정 전보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더 못하다는 응답이 21.7%로 나타났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개시가 하

도급대금 지급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채권단 등의 하도급대금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6> 구조조정 전후의 하도급대금 지급 패턴

항목	비율(%)
구조조정 개시 후에도 계속 잘 지급한다.	4.8
구조조정 개시 전에는 잘 지급했는데, 후에는 전보다 못하다.	21.7
구조조정 개시 전에 잘 지급하지 않았지만 개시 후에는 잘 지급한다.	24.1
구조조정 개시 후에도 여전히 잘 지급하지 않는다.	49.4
합 계	100.0

## 2)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물었다. 감액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응답이 35.2%, 없었다는 응답이 64.8%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도급업체 중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하도급금액 감액 여부

항목	비율(%)
있다	35.2
없다	64.8
합 계	100.0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금액을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감액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감액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가 17.7%, 10% 이상 20% 미만이 29.4%, 20%에서 30% 미만이

17.7%로 대부분 30% 미만으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래 하도급금액에 대비하여 30%이상 감액당한 응답의 비율이 35.2%이며 원래 하도급금액의 50%가 넘는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도 23.5%나 되어,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하도급금액 감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4-8> 하도급계약 감액 비율

원계약 대비 감액비율	비율(%)
10% 미만	17.7
10% 이상 - 20% 미만	29.4
20% 이상 - 30% 미만	17.7
30% 이상 - 50% 미만	11.7
50% 이상 - 70% 미만	23.5
합 계	100.0

### 3) 어음유동화 실패

원도급업체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도급대금은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음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하도급업체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기도 한다. 구조조정 징후가 있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었다. 어음은 수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할인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령한다는 응답이 37.2%로 두 번째이다. 구조조정이 임박한 원도급업체가 현금부족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하도급업체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어음이라도 적극 수령한다는 응답도 18.6%로 나타났다.

다. 무엇이든 받아놓고 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어음이 부도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판단으로 보인다. 부도어음이 되거나 어음이 유통되지 않아 할인마저 불가능할 경우 어음을 유통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랜 구조조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표 4-9>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수령 행태

항목	비율
어음이라도 적극적으로 수령한다	18.6
현금 외에 어음은 수령하지 않는다	44.2
할인가능성을 따진 후에 수령한다	37.2
합 계	100.0

#### 4) 하도급계약 해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건설공사 착공 전에 또는 공사 도중에 하도급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당초 계획했던 연간 수주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당해 공사의 수익을 전제로 계획했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기업경영과 다른 프로젝트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구조조정에 즈음하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하도급공사를 해지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났다.

하도급공사를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결과 기존의 하도급계약보다 더 낮은 가격에 다른 업체와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원도급업체가 표면적으로 이 같은 이유를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금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를 교체하면서 하도급계약금액도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하도급계약 해지는 불법행위이자 명백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도급업체가 바뀌면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조조정 전후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했거나 원도급업체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하도급계약도 해지되었다는 응답은 46.7%였다. 시행사 또는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프로젝트 추진 능력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 선정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자신의 협력업체로 교체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그나마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데 따른 시간적 비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하도급업체도 함께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응답은 전무(0.0%)하다.

<표 4-10> 하도급계약 중도해지 경험

항목	비율(%)
있다	35.6
없다	64.4
합 계	100.0

<표 4-11> 하도급계약 중도해지 사유

항목	비율(%)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에	0.0
하도급공사 시공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3.3
새로운 하도급업체와 낮은 가격에 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50.0
원도급업체도 공사를 포기했거나 타절당했기 때문에	46.7
합 계	100.0

### 3. 신용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의 어려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이 하도급업체의 금융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도급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물었다.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66.7%가 그렇다고 했고 나머지 33.3%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대부분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이 하도급업체의 신용을 하락시키고 하도급업체는 그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하도급업체 금융거래 어려움 여부

항목	비율(%)
그렇다	66.7
아니다	33.3
합 계	100.0

금융기관들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취하는 불리한 조치로는 어음할인 거부 33.7%, 신규대출 거부 25.8%, 기존대출 회수 20.2%, 대출금리 인상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도급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빌려준 자금은 회수하고 신규대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금융기관이 취하는 불리한 조치

항목	비율(%)
신규대출 거부	25.8
기존대출 회수	20.2
대출금리 인상	7.9
어음할인 거부	33.7
기타	12.4
합 계	100.0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인데, 금융기관이 신규자금 대출은 거절하고 이미 대출해 준 자금마저 회수하니 하도급업체가 미리 비상자금을 유보해 두지 않았다면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는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원도급업체의 위험이 하도급업체로 쉽게 전이되어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 4.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상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것과 같다. 나중에 원도급업체가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는 종료된다. 외상매출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원도급업체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원도급업체가 상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5%, 상환한다는 응답이 64.5%이다. 원도급업체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표 4-14>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 여부

항목	비율
상환하지 않는다.	35.5
상환한다.	64.5
합 계	100.0

원도급업체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금융기



관에 상환하지 않았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주체는 어느 쪽인지 물어 보았다. 하도급업체가 상환한다는 응답이 67.7%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후라도 원도급업체가 상환하는 경우는 14.7%에 불과했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17.6%나 되어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 주체

항목	비율
원도급업체	14.7
하도급업체	67.7
원도급·하도급업체 공동상환	17.6
합 계	100.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원도급업체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환청구권을 두는 경우가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금융기관은 원도급업체가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두는 경우도 있다. 상환청구권을 두는 것은 일종의 연대보증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할 때 상환청구권을 둔다는 응답이 77.1%로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9%에 불과했다.

<표 4-16> 하도급업체 상환청구권 유보 여부

항목	비율
그렇다.	77.1
아니다.	22.9
합 계	100.0

## 5. 하도급대금 직불과정에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비협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을 때 발주자가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바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도급업체들에게 가장 유용한 제도적 장치이다. 먼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활용했는지 물었다.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했다고 한 비율은 응답업체의 42.8%이다. 57.8%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더 높다.

<표 4-1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여부

항목	비율(%)
그렇다	42.2
그렇지 않다	57.8
합 계	100.0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는 당장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하도급대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25.4%로, 구조조정을 전후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원도급업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원도급업체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원도급업체와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원도급업체의 선택에 따라 시공물량을 확보하는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원도급업체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발주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7.0%나 된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에 당연히 응하게 되어 있음에도 직접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의 대부분은 원도급업체나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항목	비율(%)
원도급업체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해서	33.3
원도급업체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9.5
직불요청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대금 수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5.4
발주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27.0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잘 몰라서	4.8
합 계	100.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원도급업체들의 반응은 그리 협조적이지 않다. 원도급업체가 마지못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동의했다는 응답이 45.8%, 소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응답이 20.8%, 적극적으로 직접지급을 방해했다는 응답이 2.8%로, 69.4%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협조했다는 응답은 30.6%였다.

<표 4-19> 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행태

항목	비율
직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30.6
마지못해 직불에 동의했다	45.8
반대했지만 방해하지는 않았다	20.8
직불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2.8
합 계	100.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받은 발주자의 태도에 관해서도 물었다. 발주자가 직접지급에 성실하게 협조한다는 응답이 28.0%, 제3채권자 때문에 직불하지는 못했지만 협조적이었다는 응답이 28.0로 전반적으로 협조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했지만 직불 절차를 귀찮아했다는 응답이 26.7%, 비협조적이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응답도 17.3%나 되었다.

<표 4-20> 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대한 발주자의 행태

항목	비율
발주자가 충실하게 잘 협조한다	28.0
지불은 했지만 직불을 위한 절차를 귀찮아했다	26.7
발주자는 직불 해주려 했지만, 제3채권 등 다른 이유로 직불하지 못했다	28.0
직불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17.3
합 계	100.0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직접지급 동의를 요구하는지 물었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요청만으로 직접지급 해 주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하고, 직접지급의 조건으로 원도급업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는 응답이 92.1%나 되었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 요청에 발주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도 발주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원도급업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직접지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표 4-2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건으로 원도급업체 동의 요하는지 여부

항목	비율
원도급업체의 동의를 요구한다.	92.1
원도급업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불해준다	7.9
합 계	100.0

##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이행에 소극적인 보증기관의 행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원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물었다. 적극적으로 잘 이행한다는 응답이 25.7%, 지연되기는 하지만 비교적 잘 이행한다는 응답이 40.5%로 모두 66.2%가 잘 이행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당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최대한 늦게 지급한다는 응답이 31.1%나 되었다. 하도급업체는 노임, 자재 등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여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대금은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조조정 위기를 맞을 정도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마저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도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맞게 된다.

<표 4-22> 보증기관의 보증의무 이행 행태

항목	비율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한다.	25.7
시간을 끌기는 하지만 비교적 잘 이행한다.	40.5
지급하지 않으려고 부당한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늦게 지급한다.	31.1
지급하지 않는다.	2.7
합 계	100.0



## 1. 하도급업체의 대응역량 제고

### 1) 정보수집 기능 활성화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원도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이 최소한의 정보수집 활동도 하지 않거나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소극적이고 비체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사실을 사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설문응답의 40%나 되었다(<표 4-4> 참고). 이러한 주먹구구 방식으로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갑작스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원도급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원도급업체들의 입장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공공연히 언급되기만 해도 사실상 주식가격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금조달이 경색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실제로 부도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기업은 실제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다. 설문조사에서 구

구조조정 사실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통보한 경우가 전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표 4-4> 참고).

원도급업체들이 구조조정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현실은 하도급업체들이 원도급업체의 경영현황에 대한 정보수집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미리 하도급업체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점에 구조조정 사실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러한 선의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도급업체 스스로 노력을 배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설문조사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것은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거나 하도급업체간의 교류를 통해 원도급업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원도급업체의 공식적인 정보전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도급업체의 임직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수단을 강구한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원도급업체의 어음할인율을 점검하는 것도 원도급업체의 위험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진술이 있었다. 신용도가 하락할수록 어음할인율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음할인율이 갑자기 변동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상황이 심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이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실상 기업경영을 해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도급업체 간의 정보교류와 분석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각자 취득한 정보를 내 놓고 함께 분석하면 보다 유용한 체계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회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정보교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분석을 공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진술이 나왔다. 적어도 동일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들 간에는 이러한 수준의 체계적인 분석



까지 가능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원도급업체에 대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차별적인 경영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지만 하도급업체의 경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설문에서 물어본 결과 원도급업체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하도급업체와 그렇지 않은 하도급업체의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고 응답이 64.4%로 성과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많다.

<표 5-1> 구조조정 대응방식에 따른 성과격차

항목	비율(%)
차이가 있다.	64.4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	35.6
합 계	100.0

다수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의 재무정보 파악 등 하도급업체가 어떻게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가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경영성과가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도급업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다.

## 2) 최고경영자 및 조직능력 강화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기업의 시스템, 대표자의 경영능력을 들고 있다. 어떤 유형의 조직이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정보수집과 대응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을 갖춘 하도급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협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제대로 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건설업 1업체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10년 기준으로 11명이며, 10명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70%나 된다. 이 정도의 인원으로 현장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위기대응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된다. 그렇지만 적은 인력으로라도 위기대응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적인 대응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대표자가 경영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의 경우 예전에는 십장 또는 오야지라 불리는 현장근로자 출신의 대표자가 적지 않았으나 이들의 비중은 현재 약 5%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종합건설업체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건설업체를 창업한 경영자의 비율이 25%에 이르고 있다. 1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의사결정을 사실상 대표자가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은 대표자의 몫이 되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도급업체의 위기관리 핵심능력인 조직시스템과 대표자의 경영능력은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기상황에서는 경영자의 판단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의 기능이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즉 양자는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경영자일수록 평소 조직의 시스템을 잘 정비해 놓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들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원도급업체의 경영상황과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이 가능한 조직기능을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하도급업체 간의 공동대응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여러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각각의 하도급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수의 하도급업체들도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만약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정보가 노출되기 전에 독자적으로 정보를 입수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관련 정보를 다른 하도급업체와 적극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1.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친분이 있는 하도급업체에게만 비밀리에 알려주겠다는 응답(25.6%)과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독점하겠다는 응답(7.8%)도 적지 않았다.

<표 5-2> 원도급업체 구조조정 관련 독점정보의 공유의향

항목	비율(%)
적극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겠다.	61.1
친분 있는 업체에만 비밀리에 알려주겠다.	25.6
정보를 독점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7.8
기타	5.5
합 계	100.0

하도급업체들이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대응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시 하도급업체끼리 공동대응

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공동대응을 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86.7%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60.2%나 되어 실효를 보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개별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12.1%로 나타났다.

<표 5-3> 원도급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대응 여부

항목	비율
공동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한다	26.5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2.1
공동조직을 구성하지만 이해관계 차이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60.2
기타	1.2
합 계	100.0

하도급업체들의 공동대응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중에 따라 공사 착수와 종료하는 시점이 다르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금액 및 비율에 차이가 나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가 서로 다른 하도급업체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구조조정 직전이나 직후가 되어서야 공동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해관계 조정은 더 어렵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들은 시공단계의 초기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예상하지 못한 구조조정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도급업체 구조조정의 여파로 부도위기를 넘긴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도 하도급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단결하는 등 철저히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공동대응의 중요성과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 2. 자금조달 능력 확대

### 1) 자금조달 계획의 수립과 실행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상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들 중 자금이 항상 부족하다는 응답이 26.1%, 자금유입과 누출의 시기가 불일치한다는 응답이 67.2이며, 자금부족이 없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상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거나 자금이 필요한 때에 자금을 조달하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36.1%)와 돌발변수의 발생(30.2%)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돌발변수란 원도급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 파산 또는 구조조정과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으로 본다.(이종광·박선구, 2010: 45-48)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하도급업체들이 일시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치명적인 자금난에 직면하거나 심한 경우 도산에 이르는 것은 문제이다. 장기에 걸친 건설공사 과정에서 원도급업체의 자금난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도급업체들도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은 비축해 놓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체력은 자금 또는 유동성을 의미한다. 기업 내부에 유보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채널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많은 이유는 체계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을 세울 만큼의 조직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한 하

도급업체는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조직 체계를 갖춘 중대형 하도급업체는 자금부서의 기능과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직원 수가 적다거나 수주와 공사 관리에 바빠서 그럴 여력이 없다거나 하는 매너리즘을 탈피하여 현재 보유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노임이나 자재비로 지출해야 할 건설공사 관련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잘못된 자금운용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 2) 금융기관 접근성 확대

하도급업체들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비율은 대체로 20%~40% 정도로 필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외부자금 조달 수단은 거의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은 대부분 급여 등 경영자금, 장비 및 자재구매, 노임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예비자금을 축적하지 못하고 건설공사 기성대금으로 기업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전후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중지되면 단기간에도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이 거의 불가능한 하도급업체들은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을 활용한다. 거래하는 원도급업체의 신용하락이 바로 하도급업체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지나치게 높은 간접금융 비율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다 중소형 건설업체의 재무자료의 정확성과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신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구조조정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금융기관이 원도급업체의 신용이나 하도급대금이 잘 지급될 것을 믿고 빌려준 기존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중단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독립적인 신용확보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오랜 거래관계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와 유대를 기반으로 자금지원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형 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회계자료를 잘 정리하여 금융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문건설업체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신뢰를 쌓은 업체는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형 금융에 적합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보다는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경제와 밀착된 소형 금융기관이 더 적합하다. 이들 소규모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대형 금융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금융접근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용을 쌓기 위한 하도급업체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필요할 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3) 하도급대금 현금수령 원칙 고수

전문가회의에서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개시 전에는 하도급대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도급업체의 자금 동원력이 빈곤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어음은 가능하면 수령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다행히 앞에서 본 설문조사에서도 현금 외에는 수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2%, 어음도 할인가능성을 따져 수령한다는 응답이 37.7%로 대부분 하도급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수령 태도는 매우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음이라도 수령한다는 응답도 18.2%로 적지 않은 하도급업체들이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고).

법정관리의 경우 어음은 일단 수령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반면 원도급업체가 현금지급 능력이 되지 않아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이행 대상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도급업체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시급한 상황에서 어음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조급한 심정이 들겠지만, 어차피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단기간에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히 어음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 1) 구조조정 개시 신청을 하도급대금 직불 사유에 포함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신청을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징후를 알게 되는 즉시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원도급업체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15.2%)나 유치권 행사(9.8%) 등도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되었지만 설문에 응답한 72.8%의 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가장 중요한 조치로 들고 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도 하도급채권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주자가 원도급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는 아니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맺어지는 하도급계약은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간에 맺어지는 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주자가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접지급이 가능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면 하도급업체는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도급업체의 지급정지·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조정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접지급의 사유로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과 같은 구조조정은 기업의 신청과 개시 결정에 몇 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구조조정 개시 신청과 결정 사이에 있는 원도급업체는 선고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지급정지 또는 파산 상태에 처한 것과 같다. 그런데 구조조정 개시 결

정이 나아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크다. 보도(코스카저널, 2011.10.31)에 따르면 원도급업체가 기업회생 여력을 높이기 위해 현금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에 동의하기를 꺼려해 하도급업체만 자금난을 겪고 최악의 경우 부도를 맞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또 원도급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의 개시도 파산·부도 등의 직불 사유로 보는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지만 발주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개시 신청을 한 경우도 명문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더 이상 과대 보호되고 하도급업체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 되는 부당한 상황을 명백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2)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의무이행 강제

원도급업체가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미지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하도급업체를 위한 긴요한 구제수단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형식적 요소를 살펴보면 하도급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원도급업체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인지를 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업체들이 소극적인 대표적인 이유는 원도급업체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장기적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했다가 이후 하도급공사를 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주자의 비협조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에 소극적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의무적인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동의를 받아오라거나 처리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노골적인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도급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유발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을 때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참고).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협조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부서에 직접지급 시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지급 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직접지급 제도의 시행을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적극 권장하고 기관별로 직접지급제도 주무 부서를 명확히 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여 직접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타의 공공 발주기관도 서울시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도급업체의 관리인 또는 채권단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회의에서 법

정관리의 경우 법원이 직접지급을 실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지급을 엄격히 강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즉 채권단이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우선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구조조정 개시 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온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4-6> 참고). 오히려 채권단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원도급업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할 것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우선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실하게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효성 제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지급보증의 일종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이 법적근거로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 시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정거래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 있다. 양자를 시간적 차원에서 구분하면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이 미래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과거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다.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래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이지만 과거에 이미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발현된 위험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발생한 위험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환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고 품질이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하도급업체가 지급해야 할 노임·자재·장비와 관련된 비용 지급도 연쇄적으로 지체되어 그 파장의 범위가 크다.

## 1) 보증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업체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간을 위한 것이지만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증기관에 책임이행을 요청하는 일이 없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하는 대부분의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원도급업체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사유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라고 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꼭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보증기관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도급업체가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담이 하도급업체의 생사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보증기관을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설문조사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보증기관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 참고). 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지체하거나 부당한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늦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증기관이 하도급업체가 합리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또는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넘어서까지 시간을 끌면서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는 자금난을 겪거나 심하면 파산에까지 이르게 된다. 보증기관이 통념상의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면서까지 보증의무를 해태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가 보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2) 구조조정 개시 신청을 지급보증 이행 사유에 포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계약자인 원도급업체와 보증기관의 보증약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채권자인 하도급업체의 청구에 따라 보증기관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표적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관은 건설공제조합이다. 건설공제조합이 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장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를 보증사고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다(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 위의 약관에서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보증사고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구조조정 수단이다. 원도급업체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부분의 원도급업체는 그 시점에 이미 유동성이 고갈되어 있다.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면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을 할

이유도 없다. 구조조정 개시 신청은 사실상 부도와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부도와 다를 바 없는 구조조정 개시에 관한 심사를 보증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조조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구조조정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나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가능성을 인정해야 비로소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구조조정 개시 신청과 결정 사이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 동안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임과 자재대금 등 공사에 투입된 자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증기관은 대체로 보증의무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보증사고가 많을수록 보증기관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열거된 보증사고의 유형도 종래보다 확대된 것이다. 종전에는 당좌거래정지와 파산 두 가지 유형만 있었는데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약관규제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나서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항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워크아웃에도 준용하여야 한다.

###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강화

하도급법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도급업

체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4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는 소액공사로서 지급보증의 비용이 효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하도급계약 시점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낮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다. 회사채 신용평가를 통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은 종합건설업체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35개 사이다. 이들 건설업체는 모두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A등급 이상을 받았다.

<표 5-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업체

연번	상 호(가나다순)	신용등급	연번	상 호(가나다순)	신용등급
1	고려개발(주)	A-	19	(주)케이알산업	A-
2	계룡건설산업(주)	A-	20	(주)케이티네트웍스	A
3	대림산업(주)	AA-	21	(주)태영건설	A
4	대성산업(주)	A	22	(주)포스코캠텍	A+
5	(주)대우건설	A	23	(주)포스코건설	AA-
6	대우조선해양(주)	AA-	24	한국전력기술(주)	AA
7	대한동운(주)	A	25	한라건설(주)	A-
8	두산건설(주)	A-	26	(주)한진중공업	A
9	두산중공업(주)	A+	27	(주)한화건설	A-
10	롯데건설(주)	A+	28	현대건설(주)	AA-
11	삼성물산(주)	AA-	29	현대로템(주)	A
12	삼성중공업(주)	AA-	30	현대산업개발(주)	A+
13	(주)서브원	AA-	31	현대엠코(주)	A
14	씨제이프레시웨이(주)	A	32	현대엔지니어링(주)	A+
15	에스케이건설(주)	A	33	현대엘리베이터(주)	A
16	웅진코웨이(주)	A+	34	현대중공업(주)	AA+
17	지에스건설(주)	AA-	35	(주)효성	A+
18	(주)케이씨씨건설	A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1. 6월 기준)



그런데 회사채 평가 A등급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기준으로 설정해 두고 있지만 이 기준이 건설업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회사채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았던 업체 중에도 구조조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 규모와 건수도 많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하도급업체들은 다른 구제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근래와 같이 대형 원도급 건설업체들마저 자금 확보에 사력을 다할 만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들은 회사채평가 등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하도급업체들은 82.6%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신용등급 AA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응답도 8.1%였다. 단지 9.3%만이 현재와 같이 신용등급 A이상이면 면제해도 좋다고 응답했다.

만약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기준을 회사채 평가 AA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위에서 본 현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업체 35개 중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서브원,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10개 업체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자격이 된다. 우수한 건설업체들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경기가 불안정하여 원도급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하도급업체들의 연쇄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서 2001년 한국은행에서 도입하였다. 거래은행,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사전에 계약을 하며,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결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건설하도급의 측면에서 보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하도급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어음지급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어음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사실상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자부담이 따르기는 하지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 때까지는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신용도가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보자면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나쁠 것이 없다. 단 여기에는 원도급업체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제때에 잘 상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원도급업체의 변제가 있어야 하도급대금이라는 외상매출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는 종결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도급업체의 보증으로 하도급업체에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래 대출금 상환의무는 원도급업체에게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대출을 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이라는 담보 자체의 가치보다는 원도급업체의 보증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은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할 때 상환청구권을 둔다는 응답이 77.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2.9%보다 많았다(<표 4-16> 참고). 금융기관의 보수적 영업행태 외에도 원도급업체 신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처리하면서 상환청구권을 유보한 경우 원도급업체의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매개로 하는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그리고 금융기관의 관계도 얼어붙는다. 최근 2-3년 동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빈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177개 원도급업체가 4404건에 걸쳐 2153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대출 만기 시점에서 원도급업체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신용불량 또는 연쇄부도의 위기를 당한다. 금융기관이 원도급업체가 결제하지 못한 대출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상환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원활하게 상환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설문조사에서는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았

던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신 상환한 경우가 67.7%나 되었고 원도급업체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17.6%로 나타났다(<표 4-15> 참고). 하도급업체가 금융거래를 지속하고 신용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하도급업체들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로 대출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하지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치는 현실에서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77.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2.6%보다 많았다.

<표 5-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필요성 인식

항목	비율
유용한 제도로 필요하다	46.4
필요 없다	22.6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	31.0
합 계	100.0

다만 금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면서 상환청구권을 유보하는 관행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도급업체들도 실제 대출의 주체인 원도급업체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을 하도급업체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보증 및 상환주체는 원도급업체이다. 금융기관이 하도급업체만 믿고서 외상매출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상환청구권 때문에 원도급업체 대신 대출금을 결제하는 경우 애당초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

다.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된다.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정상적인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원도급업체는 사실상 외상거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경제시스템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결제하지 않는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와 동일한 재재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정책의 관점에서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같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여 새로운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공사 입찰 시에도 외상매출채권담보 미결제 업체에게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주거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가 직면하는 경영위기는 대부분 유동성 부족이다. 유동성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유동성 부족으로 직결된다. 위기를 맞은 건설업체는 조직개편,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같은 법정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대형 건설업체의 도산은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건설업체가 부실해지면 경영과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된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경제 전반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정부는 양자 간 부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처방으로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애로와 고통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언론의 이목을 끌지는 못하지만 하도급 위주의 중소건설업체 부도가 누적되면 대형 건설업체의 파산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경영난과 애로를 겪었지만 임시조치로 대응했을 뿐이며, 위기를 넘기고 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구조조정 제도의 내용과 연혁, 구조조정 실적, 건설업 구조조정과 하도급업체의 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하도급업체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파악된 694개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3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원도급업체의 재무 및 신용상태,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 정보수집 기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수집 방법도 동업자의 전언에 의존하는 등 주먹구구식이 많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비상사태의 상황이 발생해도 사전대처는 어렵고 사후대처가 일반적인데 채권금융기관 등과 경쟁하여 하도급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둘째,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극심해진다. 원도급업체도 유동성 부족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구조조정을 전후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음지급이 늘어나지만 이미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동화가 어렵고 장기보유하면 부실채권이 된다. 심한 경우 더 저가에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 하도급업체도 원도급업체에 이어 자금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원도급업체의 금융권 신용이 하락하면 그 원도급업체와 거래하



는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연쇄적으로 하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진다. 금융기관은 하도급업체를 독립적인 신용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보다 원도급업체의 신용과 연관시켜 보는 경우가 많다. 원도급업체의 부도는 하도급업체의 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조차 회수하려 한다. 하도급업체로서는 하도급대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어음도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운영자금과 공사자금 공급조차 막히면 그야말로 신규자금을 공급받을 수단이 없다.

넷째, 원도급업체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원도급업체의 신용을 매개로 원도급업체가 대출을 상환할 것을 예정하여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되지만 원도급업체는 부도 처리되지 않고 연체된 것으로만 처리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다섯째,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잘 협조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불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원도급업체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에 앞서 원도급업체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의 하도급공사 수주도 고려해야 하는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했는데 원도급업체의 승낙까지 받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이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직불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는데,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는 경우에도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보증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하도급업체의 애로는 가중되고 있다.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보다 세분화하면 기업경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구조조정 대응역량 제고, 자금조달능력을 확대 등 두 가지는 기업경영 측면의 방안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효성 제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등 3가지는 제도 측면이다. 다섯 가지 방안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하도급업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정보수집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두어야 한다. 하도급업체 대표들의 회합에서 들은 중요한 정보도 관리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고 해도 무의미하다. 초보적인 단계라 하더라도 정보수집과 관리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업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도급업체는 기업의 영세성이라는 현실만 탓하지 말고 최소한의 정보기능이라도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그 수준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다.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과 기업의 조직역량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일수록 최고경영자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은 더 중요하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인 기업을 구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

라면 오히려 기업을 절대 헤쳐 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믿고 쓸 만한 능력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우수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한 전문건설업체는 취업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체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최상의 인재는 아니더라도 이들을 묶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결국 최고경영자의 능력과 조직역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을 잘 회피하거나 좋은 성과를 낸 하도급업체는 우수한 경영자와 조직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함수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간의 공동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구조조정 원도급업체는 다수의 현장에서 수많은 하도급업체와 일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 법원, 제3의 채권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상대방들도 구조조정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 하도급업체들은 공동대응의 성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과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하도급업체의 대표는 공동대응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공동대응의 범주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방향 결정, 전문가 고용 등 광범위하다.

둘째,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고 스스로의 신용을 만들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기관과의 독립적인 거래관계와 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원도급업체의 신용에 의존하여 하도급공사를 담보로 하는 금융거래는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

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이라도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대형은행보다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당연히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도 확보하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 계획 속에는 비상시에 활용할 자금을 위한 계획도 들어있어야 한다.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현금수령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음은 시한폭탄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청산이 결정되면 어음은 부실채권으로 휴지조각이 될 것이며, 청산 후 권리를 찾기도 어렵다. 급한 마음에 어음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있으려면 사전에 계획적인 자금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용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셋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구조조정 개시 신청한 경우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개시를 기다리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사실상 부도 상태나 다름없다. 유동성이 부족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원해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예외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개시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 대상 개시 신청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한 의무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하도급업체들이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비협조를 미리 겁내서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서울시는 계약부서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 직불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

고 가능하면 하도급공사는 직불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도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발주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보증기관은 보증의무 이행에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사고가 많을수록 경영수지는 악화되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이행에 있어서 필요이상으로 조사기간을 늘리거나 보상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이러한 보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증기관이 보증의무를 해태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증 기능이 훼손되고 신뢰를 상실하여 건설산업의 중요한 기본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증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증의무 이행에 나서도록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나 워커아웃 등의 구조조정 개시 신청한 경우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만을 지급보증의 사유로 두고 있으나, 심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급불능에 준하는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상향하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하도급업체들은 아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등급업체 중에서도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AA등급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다섯째, 하도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폐지

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엄밀히 말하면 하도급대금을 대신 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다.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담보로 하도급업체에게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신뢰하는 것은 원도급업체의 상환능력이다. 앞으로 지급될 하도급대금 자체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원도급업체가 혹시라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청구권 즉 일종의 연대보증의무를 지운다. 실제로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을 요청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원도급업체는 당좌거래정지와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고 단지 연체로 처리될 뿐이다.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상환청구권을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동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청구권을 부가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하락의 여파로 우리나라 100대 건설업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실화, SOC 투자의 감소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등장한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개된다면 추가적인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체를 살리고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에도 숨 가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들의 고충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거나 사안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도급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연쇄부도의 위기를 당하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기

초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정책당국은 규모가 크고 시공실적이 많으며 기술력 높은 전문건설업체까지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연쇄부도를 피해나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문헌자료

- 강동수 · 김준경 · 최용석(2004), 국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강동수 · 한상인(2001), 워크아웃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7(3), 한국금융연구원, pp. 123-168.
- 강철구(2011), 대공황의 교훈, 프레시안(2011.5.13).
- 강호정(2000), 법정관리의 부의 이전효과 및 효율성, 서울대 박사논문.
- 구정숙(2004), 워크아웃기업의 효율적 갱생에 관한 연구: B건설 사례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 김동욱(2001), 기업퇴출 · 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김석진 · 김정우(2000), 회사재건 제수단의 평가, 재무연구, 13(1), 한국재무학회, pp. 1-25.
- 김성용(2009),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비교사법, 47, 한국비교사법학회, pp.67-94.
- 박기진 외(2007), 기업구조조정총설, 첨단금융출판.
- 박정호(2010), 도산법 개정의 주요 쟁점, 한국도산법학회.
- 서동우 · 정규상(2011),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태평양.
- 양병용(2007), 우리나라 기업회생에 관한 연구: 법정관리, 회의, 워크아웃 비교, 국민대 석사논문.
- 유세종(1997), 기업갱생의 재무적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광운대 박사논문.
- 유해용(2010), 기존경영자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pp. 32-71.
- 윤영신(1998), 영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 이명철 · 이기환 · 박주철(2000), 워크아웃기업의 추가반응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증권학회지, 26(1), 한국증권학회, pp. 143-171.
- 이성규(2000),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이정호(1999), 기업구조조정에서 출자전환의 역할, 연세대 석사논문.

이종광·박선구(2010), 전문건설업체 자금조달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정제(2004),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대한상공회의소(2001),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대한전문건설협회(2010),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2005), 한국기업 성장 50년의 재조명.

은행감독원(1998), 기업개선작업 추진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11),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을 평가

##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해소방안

---

2011년 11월 인쇄

2011년 11월 발행

발행인 노재화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14층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http://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세광문화사(02-2267-3077)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1